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726 발의연월일: 2023. 8. 9.

발 의 자:이해식・김한규・박상혁

허 영·김승원·소병훈

강병원 · 박홍근 · 이형석

이학영 • 진선미 • 김병욱

우원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·긴급구조기관, 그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, 신고를 받은 자는 관할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업무수행 도중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하는 규정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·군 수·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, 지역통제단 장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「경찰 관 직무집행법」에 따른 위험발생 방지 조치와 차량 통행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 등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받은"을 "받거나 제2항에 따라 재난 발생 등의 사실을 알게된"으로 한다.

②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· 군수·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6조의2(경찰관서의 장의 응급조치 등) 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통제단장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조치
 - 2. 차량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
 -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즉

시 지역통제단장과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재난 신고 등) ① (생	제19조(재난 신고 등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
	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
	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
	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
	관할 시장・군수・구청장과 관
	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
	<u>려야 한다.</u>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<u>받은</u>	<u>③</u> <u>받거</u>
시장・군수・구청장과 그 밖의	나 제2항에 따라 재난 발생 등
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	<u>의 사실을 알게된</u>
급구조기관의 장에게, 긴급구조	
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	
시장・군수・구청장 및 재난관	
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	
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	
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	
<u><신 설></u>	제46조의2(경찰관서의 장의 응급
	조치 등) ① 재난이 발생하거
	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

을 알게 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통제단장과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5 조제1항 각 호의 조치
- 2. 차량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
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
 따라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
 이를 즉시 지역통제단장과 시
 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통보하
 여야 한다.